『천안시 공원녹지사업본부 공고 제2026-183호』

소액수의 견적제출 안내공고

1. 견적 제출에 부치는 사항

가. 사 업 명 : 생활밀착형 숲(생활권역 실외정원) 조성사업 실시설계용역
나. 위　　치 : 천안시 서북구 성성동 290-10번지(성성호수공원 방문자센터 인근)
다. 사 업 량 : 정원조성 및 휴게시설물 설치 등 실시설계 1식
라. 사업기간 : 착수일로부터 45일
마. 기초금액 : 금37,565,000원(금삼천칠백우십육만오천원) ※ 손해배상보험료 및 부가가치세 포함

※ 입찰참가시 유의사항

투찰 전 반드시 내역서 등을 확인바라며, 산출내역에 관한 문의사항은 **정원녹지과(041-521-2815)**로 확인 후 투찰하시기 바랍니다. 이를 숙지하지 못하고 투찰한 결과에 대한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2. 견적서 접수 및 개찰

가. 견적서 접수기간 : **2026. 10. 29. (목) 10:00 ~ 2026. 11. 03. (화) 10:00**
나. 개찰일시 · 장소 : **2026. 11. 03. (화) 11:00** 입찰집행담당관 PC
다. 재　　입　　찰 : **재입찰사유 발생시**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9조의 규정에 의거 **재입찰**을 실시하며, **익일 11:00(10:00 입찰서 제출 마감) 개찰**을 실시합니다.

※ (재)입찰 등에 관한 내용은 응찰업체에 별도로 통보하지 않으며 관련 내용을 숙지하지 못하여 발생하는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 영세율을 적용받는 사업자는 반드시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가격으로 투찰하여야 하며, 최종계약 시에는 부가가치세를 제외한 금액으로 계약을 체결합니다.

3. 견적 제출 및 계약 방법

가. 본 입찰은 **총액견적, 수의견적 제출 대상**입니다.
나. 본 입찰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을 이용한 전자입찰집행이며 **적격심사 비대상**입니다.
다. 본 입찰은「지문인식 신원확인 입찰」이 적용되므로 개인인증서를 보유한 대표자 또는 입찰대리인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7조 제1항 제5호에 따라 미리 지문정보를 등록하여야 전자견적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다만, 지문인식 신원확인 입찰이 곤란한 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7조 제1항 제6호 및 제7호의 절차에 따라 예외적으로 개인인증서에 의한 전자견적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라. 본 입찰은 **공동도급이 허용되지 않습니다.**

4. 참가 자격

가.「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3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 규정에 의한 자격 요건을 갖추고, 같은법 제31조(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에 해당되지 않은 업체로서 입찰일까지(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아래의 자격을 **모두** 갖춘 업체여야 합니다.
나. 견적서 제출 안내 공고일 전일부터 입찰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법인인 경우 법인등기부상 본점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를 계속하여 **천안시**에 둔 자(업체)
다.「산림기술 진흥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15조에 따른 **산림기술용역(종합 : 4166, 또는 조경 : 4170)**을 등록한 업체 또는「엔지니어링산업진흥법」제21조에 따른 **엔지니어링사업(조경 : 3584)**을 등록한 업체 또는「기술사법」제6조에 따른 **기술사사무소(조경 : 1352)**을 등록한 업체

※ 본 입찰은「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조의3 및「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제도 운영요령」제44조에 의거 중소기업자 우선조달계약에 대한 예외에 해당됩니다.

5. 현장설명 : 설계서 열람으로 갈음함

○ 설계서 열람 장소 : 천안시 공원녹지사업본부 **정원녹지과 이시훈(☎041-521-2815)**

※ 현장 미답사 및 설계도서 미열람으로 인한 불이익에 대한 책임은 입찰 참가자에게 있습니다.

6. 예정가격 작성 및 낙찰자 결정

가. 예정가격은 기초금액의 ±3% 범위 내에서 복수예비가격 15개를 작성하여 견적 제출하는 각 업체가 추첨(2개씩 선택)한 번호 중에서 가장 많이 선택된 4개의 예비가격을 산술 평균한 금액으로 정합니다.
나. 계약상대자는 예정가격의 대비 **낙찰하한율 88% 이상**으로 견적서를 제출한 자 중에서 최저가 견적 제출 업체 순으로 결정하되, 동가 시에는 전자조달시스템의 동가입찰 낙찰자 자동추첨프로그램을 이용합니다.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15조)
다. 계약상대자는 계약상대자 결정 통보를 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계약에 필요한 서류를 갖추어 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보증방법은 소정의 계약 보증금 납부 또는 용역이행보증증권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만약 정당한 사유 없이 기간 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않을 경우 계약을 포기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7. 견적의 무효

가.『지방계약법 시행령』제39조제4 및 동법 시행규칙 제42조, 입찰유의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규정에 의합니다.

나.『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수의계약 운영요령에서 정한 결격 사유 중 어느 하나에도 해당하는 자의 견적은 무효로 합니다.

8. 보험료 등 정산

가. 국민건강보험료 등은『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 규정에 의하여 사후정산을 하게 됩니다.

나. 입찰참가자는 입찰금액 산정시 국민건강보험료 등은 예정가격 작성시 계상된 국민건강보험료 등의 금액을 **조정 없이** 반영하여야 합니다.

다. 국민건강보험료 등의 납입확인서를 첨부하여 대가를 청구하여야 합니다.

9.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정산

가.「산업안전보건법」제72조에 따른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대상인 경우 입찰참가자는 예정가격 작성시 계상된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금액을 조정하지않고 그대로 반영하여야 합니다.

나.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바에 따릅니다.

10. 입찰보증금 납부 및 세입조치에 관한 사항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7조의 규정에 의해 입찰보증금 지급확약 내용이 포함된 조달청의 전자입찰서 제출로 갈음합니다.

나. 입찰보증금의 귀속에 관하여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8조에 의합니다.

11.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 준수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에 의거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적용 대상인 경우 계약상대자는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정한 노무비 지급기일에 맞추어 매월 모든 근로자(직접노무비에 한함)의 노무비 청구내역(근로자 개인별 성명, 임금 및 연락처 등)을 제출하여야 하며, 지급내역증빙서류를 첨부하여 발주기관으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12.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 등

가.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사업장에서 종사자의 안전·보건상 유해 또는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그 사업 또는 사업장의 특성 및 규모 등을 고려하여 다음과 같이 조치사항을 이행하여야 합니다.

≪계약업체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법 제4조 및 제9조)≫

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
②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
③ 중앙행정기관·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 이행**
④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나.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하는 자는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을 숙지하신 후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입찰서를 제출한 자는 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다만, 계약 체결 시에는 낙찰업체의 대표자가 서명한「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 낙찰업체는 안전보건수준을 확보하기 위한 안전보건관리계획서를 제출해야합니다.

(안전보건관리계획서 주요사항) ①안전보건관리 인력의 구성 및 운영방안 ②안전보건관리활동계획 ③안전보건교육 계획 ④사용 기계·기구 설비의 종류 및 관리계획 ⑤작업관련실적, 작업자 이력·자격·경력 현황 ⑥최근 산업재해 발생현황

13. 유의 사항

가.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반드시 계약관련 법령 및 규정을 숙지하고 입찰에 참가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1)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행정안전부 예규)
2)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행정안전부 예규)
3)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조달업체이용약관
4)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전자입찰특별유의서
5) 설계서 등 기타사항

나. 본 입찰은 붙임의 **「계약이행 특수조건」**이 적용됩니다. 입찰자는 이를 확인한 후 입찰에 참가하여 주시기 바라며, 낙찰자가「계약이행 특수조건」에 동의하지 않을 경우 **계약상대자 자격에서 제외**됩니다. 또한「지방계약법 시행령」제92조에 따라 **입찰 참가자격 제한**을 받을 수 있으며,「지방계약법」제12조에 따라 **입찰보증금을 천안시에 납부**해야 합니다.

다. 계약상대자는 대가청구시「충청남도 지역개발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제7조에 의거 공급가액의 2.5%에 해당하는 충청남도 지역개발채권을 소화하여야 합니다.

라. 본 입찰은 천안시 청렴서약제 이행대상으로「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6조의2(청렴서약제) 규정에 의거 입찰에 참가하는 모든 업체는 청렴계약 각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하여 낙찰대상자로 선정된 업체는 대표자가 서명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마.『천안시 체불임금 없는 관급공사 운영에 관한 조례』를 준수하여야 하며, 계약시

임금지불 서약서를 별도 제출하여야 합니다.

바. 계약상대자는 계약체결 시 수의계약 운영요령에 의거 별지1 각서를 제출하여야 하고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을 준수하여 견적 제출하여야 하며 해당 법령에 의거한 수의계약체결제한여부확인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사. 전자입찰 참가자는『나라장터』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및 네트워크 장애 등으로 인하여 전자입찰 등록 및 제출이 곤란할 경우에는 개찰 마감 24시간 이전에 나라장터 콜센터(☎1588-0800)에 문의하시기 바라며, 이로 인하여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 참가자에게 있습니다.

14. 참고 사항

가. 천안시 공무원은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어떠한 경우에도 금품, 향응, 편의제공을 요구하거나 받지 않습니다. 이를 위반하는 경우 아래의 신고처로 즉시 신고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업무와 관련하여 (제3자를 통하여) 부정 청탁하는 일이 없도록 협조하여 주시고, 부정 청탁이 있는 경우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에 따라 해당기관에 대한 처분을 요청하겠습니다.

※ 천안시 공직자 부조리 부패신고 ☎ 041-521-2043~2044

- ■ 천안시 홈페이지 - 부패공직자 신고
 - ‣ http://www.cheonan.go.kr
 - ‣ 실명으로 제보하며 조치결과를 회신합니다.
- ■ 천안시 공직비리·갑질 익명신고
 - ‣ https://www.kbei.org/helpline/cheonan
 - ‣ 익명으로 제보하며 결과를 회신하지 않습니다.

나. 전자입찰 이용안내 : 나라장터 콜센터 (☎1588-0800)

다. 설계내역서 및 용역(공사)관련 : 정원녹지과 이시훈(☎041-521-2815)

라. 입찰공고 및 계약관련 : 산림휴양과 이강현 (☎041-521-5558)

2026. 10. 28.

천안시 공원녹지사업본부 재무관

붙임

계약이행 특수조건

천안시는 본 계약 건 이행과 관련하여 당초 계획대비 계약목적을 달성하고 신뢰받는 행정을 지속적으로 구현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특수조건을 적용한다.

1. 사업(면허) 양도·양수 사전 동의

계약상대자는 천안시와 체결하는 본 계약 건 이행과 관련하여 사업(개인사업자, 법인사업자, 면허)을 양도·양수하는 경우에는 다음 사항이 적용되며 **발주기관의 사전동의**를 받아야 한다.

가. 개인사업자 간 양도·양수는 계약해지

나. 개인사업자가 상법 등 관련 법률에 따라 법인으로 포괄인수되는 경우 허용

다. 상법, 건산법 등 관련 법률에 양도·양수 규정이 있는 경우만 허용

라. 계약상대자가 사전에 발주기관의 양도·양수 동의를 받지 않는 경우 **계약해지함.**

마. 공동수급체 구성원 간 양도·양수시 구성원 간 지분이전은 허용하지 않음(다만, 법률에 규정이 있는 경우 예외)

2. 계약대금 양도·양수 금지

천안시는 본 계약 건 이행과 관련하여 노무비 지급, 자재의 원활한 공급, 하도급 대금의 즉시 지급 및 계약목적 달성을 위하여 **계약대금 채권은 어떠한 경우에도 양도·양수를 허용하지 않으며, 질권설정도 불가하다.**

계약대금 양도금지 특약이 적용됨에도 불구하고 계약상대자가 양도를 한 경우 발주자는 이를 인정하지 아니하며 이로 인하여 발생하는 민·형사상 책임은 계약상대자에게 있습니다.

3. 용역대금 상계

계약상대자의 채무가 발생할 시 「지방회계법」 제65조에 따라 계약상대자가 천안시로부터 지급받는 모든 계약대금, 모든 반대급부적 비용 등은 서로 상계할 수 있다.

4. 하자보수보증금 용역대금 상계

자동채권인 하자보수보증금은 계약해지 시 기성금이나 준공금과 **우선 상계·공제처리**할 수 있다.

5. 지연배상금 용역대금 상계

자동채권인 지연배상금은 지연채권 발생 이전에 먼저 도달한 압류채권이 있다고 하더라고 준공금(타절정산금)과 **우선 상계·공제처리** 할 수 있다.

6. 대금지급 시 국세·지방세 및 4대보험 이행사항

계약대금을 지급하기 전 발주자가 국세, 지방세, 국민건강보험, 국민연금, 노인장기요양보험, 산재보험·고용보험(「건산법」 제22조 제7항에 따라 계약담당자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로 한정) 체납사실을 확인하였거나, 계약상대자가 **납세증명서 및 납부증명서를 제출하지 않는 경우** 다음과 같이 처리한다.

가. 계약상대자가 문서로 **계약대금을 청구하였다고 하더라도** 발주자가 계약상대자에게 지급할 **대금지급은 유보된 것으로 간주**하며 이 경우 대금지급에 대한 **이자는 발주기관에 청구할 수 없다.**

나. 계약상대자가 발주자로부터 받아야 할 계약대금을 채권으로 하는 **추심명령**이 발주기관에 도달할 경우 발주자는 국세청, 지방자치단체, 건강보험공단 등에 **계약상대자의 체납사실 여부를 직권으로 조회**할 수 있다. 이 경우 계약상대자가 직권조회에 동의한 것으로 간주한다.

202 . . .

계약상대자: ○○회사 대표 ○○○ (인)